

대학 연구부정 징계 사례집



대학 연구부정 징계 사례집



일러두기

- 대학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연구부정 사건의 검증 및 징계와 관련한 경험 부족과 대학 간 사례 공유의 부재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사례집은 대학이 참고할 수 있는 연구부정행위 판정에 따른 징계 사례를 제공함으로써 유형별 처분과 징계양정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징계처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발간하였습니다.
- 본 자료집은 각 대학의 연구부정행위 판정 및 징계 사례를 익명화하여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 본 자료집에 수록된 사례는 대학별 징계 규정 및 양정기준, 연구부정행위의 심각성, 고의성, 기타 고려사항 등이 모두 상이합니다. 따라서 본 자료집을 개별 연구부정행위 여부의 판정과 징계양정의 일률적인 기준으로 삼을 수 없음을 밝힙니다.
- 본 사례집에는 연구부정행위 이외 다른 징계 사유와 병합 처리된 사례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합 처리된 징계 사유의 경우 상세 내용 확인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밝힙니다.
- 본 사례집은 “연구부정 판정에 따른 징계 사례에 관한 연구”(김정희, 2020) 과제의 수행결과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본 사례집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진의 견해이며 한국연구재단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I. 조사 개요	1
1. 조사 목적	1
2. 사례조사 개요	1
3. 징계 및 처분 사례 세부 조사양식	2
4. 징계사례집 활용 유의사항	3
II. 관계 법규	4
1. 연구윤리 관련 법규	4
2. 징계의 종류 및 효력	5
3. 징계 관련 법률 및 기준	7
4. 연구부정 판정 및 징계관련 현행 법령	9
III. 유형별 연구부정행위 징계 대표사례	10
1. 위조, 변조 대표사례	11
2. 표절 대표사례	13
3. 부당한 저자 표시 대표사례	16
4. 부당한 중복게재 대표사례	19
[부록] 대학 연구부정행위 징계 사례 목록	22
1. 위조·변조 등에 따른 징계 사례	22
2. 표절 등에 따른 징계 사례	24
3. 부당한 저자 표시 등에 따른 징계 사례	40
4. 부당한 중복게재 등에 따른 징계 사례	46
5. 통상적 용인 범위 이탈 행위에 따른 징계 사례	49

I

조사 개요

1 > 조사 목적

- 대학은 연구부정 사건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다양한 유형의 연구부정행위 판정에 대한 징계양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 개별대학에서 접하기 어려운 연구부정행위 징계사례의 공유·확산을 통해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책임있는 연구문화 조성을 지원하고자 함.

2 > 사례조사 개요

- 조사명 : 대학 연구부정행위 징계 및 처분 사례
- 조사대상 : 국내 413개 대학
 - ※ 4년제 대학, 전문대, 대학원대학 등(대학알리미 기준)
- 조사기간 : 2021년 2월 26일 ~ 3월 12일
- 조사기관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조사내용 : 연구부정행위 징계 및 처분 사례
 - ※ 최종판정일 기준 최근 3년(2018.1. ~ 2020.12.)
 - 연구부정 판정 및 징계·처분 유형(표1 참조)
 - 징계·처분 사례 세부 내용
- 조사결과 : 114개 대학 응답
 - 사례 있음 : 53개교 / 사례 없음 : 61개교
 - 사례 확보 : 총 83건
- 분석방법 : 대학 제출 자료 기반 조사(대학명, 개인정보 등 익명처리)

3 징계 및 처분 사례 세부 조사양식

- 사건 개요
- 처분/징계 발의 요구 내용 및 사유 (양정 기준 등)
 - ※ 연구진실성위원회 등의 처분/징계에 대한 발의/요구가 없는 경우 미기재
- 최종 처분 시 양정기준 및 감경/가중 사유 (포상, 징계시효 등)
- 기타 고려사항
 - ※ (예시) 연구부정 이외의 다른 비리와 합쳐진 경우 등

〈표 1〉 연구부정 판정 및 징계·처분 유형 조사표

구분	선택 항목
A. 학문분야	① 인문학 ② 사회과학 ③ 자연과학 ④ 공학 ⑤ 의·약학 ⑥ 농·수·해양학 ⑦ 예술·체육학 ⑧ 복합학
B. 직위	① 전임교원 ② 비전임교원 ③ 대학원생 ④ 기타
C. 연구물 유형	① 연구보고서 ② 작품 ③ 저서(단행본) ④ 학술논문 ⑤ 학위논문 ⑥ 지식재산권(특허 등) ⑦ 기타
D. 연구부정행위 유형	① 위조 ② 변조 ③ 표절 ④ 부당한 저자 표시 ⑤ 부당한 중복게재 ⑥ 연구부정행위 제보를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 ⑦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⑧ 유형 미제시
E. 징계시효 경과여부	① 징계시효 경과함(징계 없음) ② 징계시효 경과하지 않음
F. 판정에 따른 처분 및 징계 (복수응답가능)	① 주의 ② 경고 ③ 견책 ④ 감봉 ⑤ 정직 ⑥ 강등 ⑦ 해임 ⑧ 파면 ⑨ 승진 및 임용 불이익 ⑩ 연구비 회수 ⑪ 성과급 및 보수 반영 ⑫ 논문 철회 ⑬ 학위취소 ⑭ 조치 없음 ⑮ 보직사퇴 ⑯ 기타

- 사례별 연구부정행위의 심각성 및 고의성에 차이가 있고, 대학별 징계 규정과 양정 기준이 상이하며, 징계양정은 연구부정행위 이외의 건과 병합될 수 있음.
- 수록된 사례는 개별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판정하거나, 연구부정행위의 징계를 양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음.
- 본 사례집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대학 내 징계 및 행정처분에 대한 사항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사례를 일부 포함하였음.
-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제출한 자료 중 주요 사례 8건과 부록 53건을 발굴하여 수록하였음.

II

관계 법규

1 연구윤리 관련 법규

- 연구윤리 관련 현행 법령은 학술진흥법을 모법으로 하여 규정되어 있음¹⁾. 학술진흥법 제15조 제1항은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 및 대학 등은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면서 연구부정행위의 유형으로 ① 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② 그 밖에 연구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라고 규정함.
-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학술진흥법 등을 포함한 연구윤리 관련 법령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대학에서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고 있으며(학술진흥법 제15조 제4항),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6조 제1항).
-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의 연구부정행위 범위는 아래와 같음(제12조).

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1) 출처: 김정희 외(2016). 2015년도 국내 연구윤리 실태 및 인식조사 연구, 한국연구재단.

-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 ② 대학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외에도 자체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자체 지침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일반적으로 징계란 의무위반행위자에 대해서 그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며 교육공무원인 경우에는 국민으로서 가지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분보장의 견지에서 징계의 사유와 절차·효력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있음2).

2 > 징계의 종류 및 효력

- 징계는 동일 비위에 대하여 형사벌을 병과 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며 교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계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에 있어도 징계처분할 수 있음3).

2) 출처: 인사혁신처(2019). 징계업무편람.
 3) 출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2019.12). 사립학교 교원 징계 업무 표준 매뉴얼.

- 2021년 12월 현행 법령 기준 대학 교원의 일반적인 징계 종류
 - 사립대학 교원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제2항에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의 여섯가지 종류를 제시하고 있음. 하지만 동법 제3항에서 대학 교원, 조교에 대해서는 강등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실제로는 강등을 제외한 다섯가지가 적용되고 있음.
 - 국·공립대학 교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의 여섯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음.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조의2는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은 “중징계”로, 감봉 또는 견책은 “경징계”로 구분함. 국가공무원법에 제시된 여섯가지 유형의 징계종류별 효력을 인사·신분, 보수·퇴직으로 구분하면 <표2>와 같음.

<표 2> 국가공무원 징계종류별 효력

징계 종류	인사·신분	보수·퇴직
파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공무원) 관계 배제 • 5년간 교원(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직기간 5년 미만인 자는 퇴직급여액의 1/4 감액, 5년 이상인 자는 퇴직급여액의 1/2 감액
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공무원) 관계 배제 • 3년간 교원(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급여액 전액 지급, 단, 금전적 비리 해임자는 퇴직급여의 1/4 감액, 재직기간 5년 미만인 자는 퇴직 급여의 1/8 감액
강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계급 내림+정직 3월, 교육공무원은 동종의 직무내에서 하위 직위 임명 • 처분기간(3월) + 18개월간 승급제한,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중사 배제 • 고등교육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교원 및 조교는 적용 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월간 보수 전액 감액 • 3개월간 각종 수당 전액 감액
정직 (1월~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의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8월간 승진, 승급 제한 • 징계기록 말소 제한 기간 7년 • 처분기간은 경력평정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분기간 중 보수(수당 포함)의 전액 감액
감봉 (1월~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분기간 및 처분집행의 종료일부 12월간 승진, 승급 제한 • 징계기록 말소 제한 기간 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봉 기간 중 보수(수당 포함)의 1/3 감액
견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함 • 처분집행의 종료일부 6월간 승진, 승급 제한 • 징계기록 말소 제한기간 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당 등을 전액 지급, 다만, 정근수당 지급대상 기간 중에 견책처분을 받은 경우 미지급

※ 출처: 인사혁신처(2019). 징계업무편람 46~49쪽 참조하여 재구성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교원의 징계 처분으로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이 있으며, 기타 행정처분으로는 경고, 주의, 연구비 회수, 논문철회, 학위취소, 승진 및 임용 불이익, 성과급 및 보수반영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통상적으로 <표2>에 제시된 징계유형 외의 기타 행정처분은 각 대학별로 마련된 교원인사·복무규정, 연구윤리 관련 규정, 학칙 등에 근거하여 내려지고 있음.

3 징계 관련 법률 및 기준

-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는 교육공무원 징계령,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적용을 받음
-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2조에 교육공무원 징계양정규칙 [별표]에 제시된 징계기준을 준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이에 따라 국 공 사립의 교원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규칙 [별표]에 제시된 징계기준을 따르며 동 기준에 따르면 연구부정행위는 징계대상 비위유형 중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됨

<표 3> 교원유형별 징계관련 법령

사립학교 교원	국공립학교 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립학교법 제61조~67조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의2~제25조의4 •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징계기준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공무원법 제50조~52조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 공무원 징계령, 교육공무원 징계령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 징계기준) •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4>와 같음

〈표 4〉 교육공무원 연구부정행위 등에 따른 징계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1. 성실의무 위반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사. 연구부정행위	파면	해임	해임-강등-정직	감봉-견책

※ 출처: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20.7.) [별표] 징계기준 발췌

- 최근 연구부정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는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됨.(교육공무원법 제52조(개정 2020.12.22.) 및 사립학교법 제66조의 4(전문개정 2020.12.22.))

4 연구부정 판정 및 징계관련 현행 법령

-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행정규칙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표5>와 같음.

<표 5> 대학 연구부정 판정에 따른 행정처분 및 징계관련 법령

구분	연구윤리 관련 법령	교원 징계 관련 법령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술진흥법 제15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제3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립학교법 제61조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79조, 제80조 • 교육공무원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
대통령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20조, 제20조의2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6조, 제5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공무원 징계령 제1조의3 •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조의2, 제2조, 제51조, 제21조
총리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제5조
부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조 •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2조, 제5조
행정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2조, 제1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 제5조

< (참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관련 법령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제35조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제31조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32조~35조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 관련된 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제재처분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Ⅲ

유형별 연구부정행위 징계 대표사례

본 장에서는 수집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징계 및 행정처분 사례 중 대표 사례들을 (이외 사례는 부록참고) 외부 전문가 및 관계관 등의 자문을 반영하여 유형화 하였음. 대표사례로 총 8건을 제시함(〈표6〉).

〈표 6〉 대학 연구부정 판정에 따른 징계 및 행정처분 사례

번호	학문분야	직위	판정 결과	징계시효	대학 최종 처분	타건과 병합 여부
1.1	의·약학	전임 교원	위조, 변조	미경과	해임	
1.2	농·수·해양학	전임 교원	변조	미경과	경고, 성과급 및 보수 반영, 논문 철회 요청	
2.1	사회과학	전임 교원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미경과	해임*	병합
2.2	예술·체육학	전임 교원	표절	미경과	감봉	
3.1	의·약학	전임 교원	부당한 저자 표시	미경과	감봉, 해임	병합
3.2	인문학	전임 교원	부당한 저자 표시	미경과	견책, 연구비 회수, 논문 철회 요청	
4.1	의·약학	전임 교원	부당한 중복게재	미경과	견책	
4.2	공학	전임 교원	부당한 중복게재	미경과	견책, 성과급 및 보수 반영, 논문 철회 요청	

* 소청심사 결과 “파면→해임”으로 변경된 사례

1 위조, 변조 대표사례

위조, 변조 등 2개 이상의 연구부정으로 해임 처분(중징계)된 사례, 기존 논문의 데이터를 변조하여 새로운 논문에 삽입하여 공동저자 중 교신저자인 전임교원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진 사례 등 총 2건

1.1 위조, 변조의 연구부정으로 해임 징계

- 의·약학분야의 전임교원이 학술 논문에 위조, 변조의 연구부정행위로 해임으로 징계된 경우

※ (참고) 국가R&D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참여제한 및 연구비 환수 제재조치 포함

□ 사건 개요

- A교수가 교신저자이자 1저자로 등재된 논문이 위·변조 되었다는 제보가 접수되었음.
- 제보 내용은 2편의 논문에 제보자의 실험결과가 사용되었는데, 실험결과와 전혀 다른 위·변조된 그림이 수록되었다는 것임.
- A교수의 소속대학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한 결과, 논문에 포함된 그림이 ‘위·변조’ 되었다고 판정하였음.
- 위·변조된 논문을 게재한 책임이 있는 A교수를 해임 처분하였음.
- A교수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 연구책임자로서 해당 논문 중 1편을 연구업적으로 등록함에 따라, 한국연구재단은 연구비 일부 환수와 *년의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확정하였음.

□ 최종 처분 시 양정기준 및 감경/가중 사유

- 위·변조된 논문을 게재한 책임이 있는 A교수에 대해 교원의 신분을 상실하는 해임 처분함.

1.2. 변조에 대해 교신저자로서 책임을 물어 경고 처분

- 농·수·해양학분야의 3인이 공동저자인 학술 논문에 변조의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되었고, 교신저자인 전임교원에게 경고, 성과급 및 보수 반영, 논문 철회의 처분을 내린 경우

□ 사건 개요

- 정부 부처 홈페이지 신고센터를 통해 논문의 자료조작 의혹이 있다는 제보가 익명으로 접수되어 제보 내용을 해당 저자의 소속 대학으로 통보하였음.
- 대학 연구윤리위원회 조사 결과
 - 국제학술지에 투고한 해당 논문의 제1저자인 A(대학원생)가 데이터 분석 결과를 이미지 파일에 복사하여 재사용, 좌우상하 전환 등의 방식으로 데이터를 변조한 흔적 발견.
 - 해당 실험내용이 연구노트에 기록은 되어 있으나, 논문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원본 필름이 첨부되어 있지 않음.
 - 연구부정행위 중 ‘변조’에 해당함으로 판정.
- A(제1저자, 대학원생): 단독 실험 수행, 데이터 변조에 관여, 미 처분(졸업 후 출국).
- B(공동제1저자): 실험 참여, 데이터 변조 정황 확인 불가, 미 처분.
- C(교신저자, 전임교원): 실험 참여 또는 데이터 변조 관여 정황 발견 불가. 교신저자로서의 책임을 물어 경고, 성과급 및 보수 반영, 논문 철회 요청 처분.

□ 처분 요구내용 및 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교육공무원법 제51조제1항, 공무원비위사건처리규정 등의 규정에 의거 징계의결 요구.

□ 최종 처분 시 양정기준 및 감경/가중 사유

- 교신저자인 C교수가 데이터 관리지도 및 연구노트 작성 지도에 소홀한 책임이 있어 경고, 성과급 및 보수 반영, 논문 철회 요청 처분함.

2 표절 대표사례

표절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연구부정으로 해임(중징계)으로 처분된 사례, 대학의 사업단 보고서를 개인의 학술 논문에 사용한 표절로 감봉(경징계) 처분된 사례 등 총 2건

2.1. 표절 포함한 3개 연구부정 및 기타 사유가 병합되어 해임 징계

- 사회과학분야의 전임교원이 학술논문에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게재의 연구부정과 학생에 대한 금품요구가 추가되어 해임 처분을 받은 경우임. 최초 판정은 파면이었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결에 따라 최종 해임 처분을 받은 경우

□ 사건 개요

- A부교수가 스스로 본인의 논문철회를 요청한 제보가 접수되었음. 조사 과정에서 익명의 제보자가 A부교수의 다른 논문 두 편에 대한 논문표절 등의 연구부정행위 의혹 관련 자료를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제출하여 조사가 진행되었음. 소속대학의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검증결과 총 3편의 논문에서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등 연구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정.

- 대학원 석사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학점부여 및 졸업시험 등과 점수 등을 거론하며 수차례에 걸쳐 지속적, 강압적으로 금품을 강요한 사건과 기타 사유와 병합하여 징계 처분.

□ 처분 요구내용 및 사유

- 소속대학 연구윤리 및 진실성확보를 위한 규정, 교원인사규정 위반에 근거 하여 ‘파면’ 징계 요청.

□ 최종 처분 시 양정기준 및 감경/가중 사유

- A부교수 파면(연구부정행위 + 학생에게 금품을 강요한 사안 병합)
- 소속대학 교원인사규정 위반
- 추후 A부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 심의결과 너무 과중 하다고 판단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의거 ‘해임’으로 변경하였음.

2.2. 대학의 사업단 보고서를 개인 학술논문으로 사용한 표절 등 연구부정으로 감봉 징계

- 예술·체육학분야의 전임교원이 대학의 사업단 보고서 일부를 지속적으로 개인 학술논문으로 게재하였으나, 실질적인 참여 및 기여사실이 없었음. 표절, 변조, 부당한 저자 표시 판정으로 감봉 처분된 경우

□ 사건 개요

- 소속대학의 사업단 보고서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인 논문으로 게재한 A교수에 대한 의혹이 제기됨.
- 제보내용 : A교수가 게재한 논문은 해당 대학의 사업보고서 내용을 차용 하였는데 A교수가 실제로는 학교 사업 및 보고서와 관련하여 참여한 바가 없다는 것이었음.

- 한국연구재단에서 익명제보를 접수하여 A교수의 소속대학에 이관, 대학에서 연구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검증이 진행됨.
- 대학의 검증 결과 피조사자의 논문이 인용한 양이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며, 인용한 내용의 아이디어나 어구 및 논리가 저자의 창작물로 보기에 무리가 있음. 또한 대부분의 문장이 보고서의 문장을 그대로 가져다 쓰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았다고 하여 ‘표절’ 판정.
- 연구내용이 대부분 만족도 평가 자료를 기반하며, 피조사자는 만족도 조사에 기여한 부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한 저자 표시’로 판정.
- 만족도 조사는 피조사자의 논문을 목적으로 수행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연구를 위해 만족도 조사가 설계되었고, 수행된 것으로 판단할 개연성이 존재하므로 ‘변조’로 판정.

□ 최종 처분 시 양정기준 및 감경/가중 사유

- A교수에게 감봉 3월 처분
 - 양정기준 : 「사립학교법」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제1항 제1호 ‘이 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 하는 비위를 행하였고,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징계의 기준)에 의거, [별표] 징계기준의 ‘비위의 유형’의 ‘1. 성실의무 위반’ 중 ‘사. 연구부정행위’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를 적용.

3 ▶ 부당한 저자 표시 대표사례

저자 2인에 각각 다른 징계가 처분된 사례와 연구비 회수와 논문 철회가 처분된 사례 등 2건

3.1. 부당한 저자 표시와 기타 사유로 공동저자 2인에게 감봉 및 해임 징계

- 의·약학분야의 전임교원 2인이 학술 논문에 부당한 저자 표시로 각각 감봉과 해임의 징계를 받은 경우

□ 사건 개요

- A교수의 연구윤리 위반 의혹 제보를 소속대학에서 접수하여 연구윤리진실성 위원회를 통해 조사가 진행 됨.
 - B교수는 자신의 논문에 A교수를 논문에 부당하게 저자로 표시해준 사실이 있고, 추후 해당 논문을 철회하였음을 인정함. 그에 따라 B 교수는 ‘부당한 저자 표시’ 위반으로 판정.
 - A교수는 소명을 하지 않음.
 - A교수는 B교수 논문에서 정당한 기여를 하지 않고 저자로 기재되었다고 하는 참고인들의 진술내용 등을 근거로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함으로써 판정.
 - 또한, 참고인들은 B교수가 공동저자들에게 강압을 행하여 A교수를 저자로 포함시켰음을 진술함에 따라, 부당한 압력을 가한 사실이 인정되었음.

□ 최종 처분 시 양정기준 및 감경/가중 사유

- B교수에 대한 징계(감봉 1월) 사유
 - 연구부정행위(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및 연구부적절행위를 함으로써 법규 준수 의무·품위유지 의무·성실 의무 위반.

- A교수에 대한 징계(해임) 사유

- 동료 B교수에게 보직을 이용한 위력을 행사하여 연구부정행위(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및 연구부적절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법규준수 의무· 품위유지 의무 및 지위남용금지 의무 위반.
- 재계약 및 정년보장 심사 시 연구실적심사에 연구부정행위 및 연구부적절행위 논문을 사용함으로써 업무방해에 따른 성실 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 A교수에 대한 징계(해임) 기타 사유 : 직원 공개 채용 시 위력을 행사함으로써 별도의 법규준수 의무·품위유지 의무 및 지위남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건과 병합하여 처리.

3.2.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당한 저자 표시로 견책 징계

- 인문학분야의 전임교원이 학술 논문에 부당한 저자 표시로 견책, 연구비 회수, 논문 철회의 처분을 받은 경우

※ (참고) 국가R&D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참여제한 및 연구비 환수 제재조치 포함

□ 사건 개요

- □□대학 A교수가 연구책임자로 수행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를 출판한 학술지 논문에서의 연구부정행위(부당한 저자 표시) 제보가 접수되었음.
- 제보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인 A교수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제안 및 결정에는 참여했지만 연구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참여 또는 기여가 없었음. A교수는 부당하게 자신을 교신저자로 하여 1편의 논문은 출판되었고, 다른 1편의 논문은 심사 중인 상태라는 것임.

-
- 피조사자의 소속대학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한 결과, 위 논문 2편에 대해 자체 연구윤리 규정 상 ‘부당한 저자 표시’로 판정
 - 피조사자인 A교수는 조사결과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어 판정결과가 ‘부당한 저자 표시’로 확정.

□ 처분 요구내용 및 사유

- 교원징계규정에 의거 ‘견책’
- A교수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 연구책임자로서 해당 논문 중 1편을 연구업적으로 등록함에 따라, 한국연구재단은 연구책임자 A교수에 대한 *년의 참여제한과 연구비 환수 제재조치를 확정하였음.

□ 최종 처분 시 양정기준 및 감경/가중 사유

- 학술진흥법 제19조(사업비의 지급 중지 등)에 의거, 지급 사업비 환수
- 학술진흥법 제20조(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에 의거, *년 참여제한
- 학회 연구윤리규정 제*조(연구부정행위),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등재제도 관리지침 제9조(게재 논문의 연구부정행위)에 의거, 연구부정행위 판정 논문 게재 철회.

4 ▶ 부당한 중복게재 대표사례

국문 논문을 번역한 부당한 중복게재로 견책 처분된 사례와 부당한 중복게재로 견책, 성과급 및 보수 반영, 논문 철회의 징계 및 처분된 사례 등의 총 2건

4.1 부당한 중복게재로 견책 징계

- 의·약학 전임교원이 한 학술지에 게재한 국문 논문을 번역하여 다른 학회지에 중복게재하여 견책 처분이 내려진 경우

□ 사건 개요

- ○○학회지에 게재된 국문 리뷰 논문(제1저자 A)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학회지에 중복게재(제1저자 A, 교신저자 B) 하였다는 의혹이 □□학회지 윤리위원회에 의해 제기됨.
- 한국연구재단에서 피조사자의 소속대학에 연구부정행위 사실 조사 및 판정을 요청함.
- 전임교원 A, B의 소속대학의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연구부정행위 의혹 관련 조사 결과, ○○학회지 게재 국문 리뷰 논문과 □□학회지 게재 영문 리뷰 논문 사이에 일부 중복게재 사실이 인정되며, ‘부당한 중복게재’에 해당한다고 판정.

□ 처분 요구내용 및 사유

- 사립학교법 제61조 및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성실의무 위반-연구부정행위’의 징계(견책)를 처분.

□ 최종 처분 시 양정기준 및 감경/가중 사유

- 논문이 게재된 두 학회지 편집위원회의 허가를 통해 이차출판이 가능하였으나, 연구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점.
- ○○학회지 논문에 없는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여 □□학회지 논문에 게재하는 등 두 논문은 중복출판의 여러 유형 중 COPY(복제)가 아니라 ‘일부 중복’인 점.

4.2. 부당한 중복게재로 견책 징계

- 대학연구활동 실태조사에서 공학분야 전임교원의 학술논문에 부당한 중복게재 사실이 발견되어 견책, 성과급 및 보수 반영, 논문철회 요청의 처분이 내려진 경우

※ (참고) 국가R&D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참여제한 및 연구비 환수 제재조치 포함

□ 사건 개요

- 대학연구활동 실태조사에서 동일한 제목을 가진 2편의 논문이 각각 출판된 사실이 발견되었음. 각 논문의 교신저자는 A교수였으며, 저자 2명은 동일하고, 한편의 논문에서는 2명의 다른 저자가 추가된 경우임. 해당 논문의 사사표기가 다름으로 인하여 부당한 중복게재 뿐만 아니라 연구실적 중복사용 의혹이 제기되었음.
- A교수의 소속대학에서 진행한 유사도 검색 프로그램 조사결과 논문 간 유사도가 지나치게 높게 나타남. 소속대학은 자체조사를 진행하여 공식적으로 출판된 자신의 저작물의 주된 내용과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내용을 다른 저작물에서 다시 활용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은 행위인 ‘부당한 중복게재’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음.

-
- A교수는 공동저자인 연구실 소속 대학원생의 논문투고 관련 지도에 미흡함과, 해당 2편의 논문이 실질적으로 매우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여 출판됨으로써 부당한 중복게재에 해당됨을 인정하였음.
 - A교수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있음에 따라, 한국연구재단은 A교수의 공동연구원 연구수당 금액을 환수하고 *년의 참여 제한 제재조치를 처분하였음.

□ 처분 요구내용 및 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교육공무원법 제51조제1항, 공무원비위사건처리규정 등의 규정에 의거 징계.

1 위조·변조 등에 따른 징계 사례

사례 1-1	논문 데이터 반복 사용의 위조로 경고 처분						
	학문분야	직위	연구물 유형	연구부정 행위유형	징계시효	대학측 처분	법원/ 소청 결정
	의·약학	전임교원	학술논문	위조, 변조	미경과	경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st publication peer review site인 PubPeer에서 □□대학 및 ○○병원 소속 교원들이 출판한 다수의 학술논문에 수록한 그림에 대한 연구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되었음. ○ 의과대학에서 □□대학으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심의 요청에 따라 피조사자 교수들 대상으로 연구부정행위 검증 실시. ○ ○○병원에서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술논문에 포함된 그림에서 부주의한 재사용을 했다고 확인함. ○ 피조사자인 전임교원 8명에게 ‘위조’, ‘변조’로 판정하고, 경고 처분하였음. 							
사례 1-2	데이터 조작을 통한 논문 작성으로 학위 취소						
	학문분야	직위	연구물 유형	연구부정 행위유형	징계시효	대학측 처분	법원/ 소청 결정
	자연과학	대학원생	학위논문	변조	미경과	학위취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부정행위 등 이유로 철회된 학술논문의 제1저자의 학위논문에 수록된 연구데이터에서 ‘변조’ 등이 확인됨 ○ 연구부정행위 판정에 따라 해당 대학원생의 학위를 취소처분 하였음. ○ 대학원생의 지도교수는 피조사자인 대학원생의 논문지도 미흡으로 경고 처분하였음. 							

사례 1-3	타 논문의 데이터 도용과 표절, 일부 데이터 위조, 표절 등으로 정직 처분						
	학문분야	직위	연구물 유형	연구부정 행위유형	징계시효	대학측 처분	법원/ 소청 결정
	사회과학	전임교원	학술논문	위조, 변조, 표절	미경과	정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교수의 지도학생이었던 대학원 졸업생 B는 논문컨설팅 업체에 컨설팅을 의뢰 하였고, 해당 업체는 다른 의뢰 고객인 C의 석사학위 논문 초안과 유사한 논문을 B에게 전달 하여 해당 논문이 A교수는 해당 논문의 제1저자로, B 졸업생은 교신저자로 등재 되어 게재되었음. ○ 제보자 C는 석사학위 취득 후 동일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기 위해 KCI 문헌유사도 검색을 실시하던 중 본인의 논문이 B의 학술논문과 유사한 것을 확인하고 논문컨설팅 업체에 항의하였고, B와 논문컨설팅 업체는 C에게 사과하며 논문을 철회하기로 합의하였음. ○ 이후, B가 논문을 철회하지 않자 C는 해당 내용을 한국연구재단에 제보하였고, 제보가 해당 대학으로 이관되어 조사를 실시함. ○ A교수의 소속 대학의 조사 결과 학술논문이 C의 석사학위 논문과 상당부분 유사하고 (‘표절’), 실제로 수집하지 않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구결과를 서술하였으며(‘위조’), 일부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한(‘변조’) 연구부정행위로 판정하고, 판정결과를 학술지에 통보하였음. ○ 전임교원인 A교수에게 정직 처분, B는 졸업생이어서 미처분 하였음. 							
사례 1-4	데이터 조작을 통한 논문 작성으로 정직 처분						
	학문분야	직위	연구물 유형	연구부정 행위유형	징계시효	대학측 처분	법원/ 소청 결정
	의·약학	전임교원	학술논문	변조	미경과	정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조작하여 검증되지 않은 결과를 검증된 결과인 것처럼 논문을 작성하여 투고하였다는 내용으로 제보가 접수됨. ○ 제보논문과 비교논문의 테이블 데이터 내용상 상이하야 하지만, 비교논문의 테이블 내용을 그대로 제보 논문에 맞추어 제시한 것으로 확인되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 ‘변조’로 판정함. ○ 정직 처분. 							

2 표절 등에 따른 징계 사례

사례 2-1	논문 표절로 정직 징계 처분						
	학문분야	직위	연구물 유형	연구부정 행위유형	징계시효	대학측 처분	법원/ 소청 결정
	예술· 체육학	전임교원	학술논문	표절	미경과	정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 A교수가 ○○학회지에 게재한 논문이 학술지 자체조사결과 '표절'로 판명되었고, A교수 또한 소명서를 통하여 표절사실을 인정하였음. ○ 징계요청(관련근거 : 대학 연구윤리 규정 제**조 *항). ○ A교수 정직 3개월 처분, 대학 교원인사규정 제*조(성실의무), 제*조(품위유지의무) 위반. 							
사례 2-2	논문 표절로 경고 처분(감경)						
	학문분야	직위	연구물 유형	연구부정 행위유형	징계시효	대학측 처분	법원/ 소청 결정
	사회과학	전임교원	학술논문	표절	미경과	경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감사실로 논문 표절 제보가 접수되어 예비조사위원회를 거쳐 연구윤리진실성 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절'로 판정됨. ○ 양정 감경 및 참작사유의 근거 : 학교법인정관 제*조(징계의결 시 정상참작) 등 ○ 감경 사유 :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였고, 해당 교원이 총장표창을 받았던 점이 고려되어 경고 처분하였음. 							

사례 2-3	지도학생 논문을 표절하여 견책 처분						
	학문분야	직위	연구물 유형	연구부정 행위유형	징계시효	대학측 처분	법원/ 소청 결정
	자연과학	전임교원	학술논문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5건 중 3건 경과, 2건 미경과	견책, 승진 및 임용 불이익, 성과급 및 보수 반영	
<p>○ 피조사자는 총 5편의 학술논문에서 피조사자가 과거 학위논문을 지도했던 학생들의 연구 내용 및 결과를 출처표시 없이 수록함에 따라, '표절'과 '부당한 저자 표시'로 판정 됨.</p> <p>○ 징계대상자가 교수 조기승진 임용심사 당시 연구부정행위가 포함된 학술논문을 실적으로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어 교수 조기승진 임용이 취소되었고, 교수 승진에 따른 급여 증가분도 승진이 취소됨에 따라 회수됨.</p> <p>○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라 성실 의무 위반(부당한 저자 표시 및 표절)으로 판정하고, 경징계 의결요구.</p> <p>○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양정이 이루어졌고, 포상 및 징계이력 등 감경·가중 사유는 존재하지 않았으나, 대상 논문 5건 중 3건은 징계시효가 도과하였음 과 피조사자가 5편의 논문을 자진철회한 점을 고려하였음.</p>							
사례 2-4	대학원생의 논문을 표절하여 논문철회 요청 처분						
	학문분야	직위	연구물 유형	연구부정 행위유형	징계시효	대학측 처분	법원/ 소청 결정
	의·약학	대학원생	학술논문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미경과	논문 철회 요청	
<p>○ 연구부정행위 의혹 제보에 대한 □□대학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조사 결과, 당시 대학원 생이던 피조사자의 조사대상 논문 6편 중 2편은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및 '그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3편은 '표절'의 연구부정행위가 있다고 최종 판정.</p> <p>○ 해당 대학원생은 자퇴학생으로 제재조치는 불가하였음.</p>							

사례 2-5	타인의 논문을 표절하여 학술논문을 출판하여 해임 처분						
	학문분야	직위	연구물 유형	연구부정 행위유형	징계시효	대학측 처분	법원/ 소청 결정
	인문학	전임교원	학술논문	표절	미경과	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교수가 게재한 학술논문에서 다수의 타인 논문을 인용하였으나 인용표기가 없어 표절 의혹이 제기됨. ○ 대학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해당 의혹을 조사한 결과 ‘표절’로 판정되었고, 조사결과에 대한 피조사자 A교수의 이의신청이 기각됨에 따라「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운영 규정」제*조에 의거하여 징계조치 요청. ○ 법인징계위원회에서 A교수 ‘해임’ 결정(감경/가중 사유 없음). 							
사례 2-6	논문 표절로 학위 취소 처분						
	학문분야	직위	연구물 유형	연구부정 행위유형	징계시효	대학측 처분	법원/ 소청 결정
	사회과학	전임교원, 대학원생	학위논문	표절	미경과	기타, 학위 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부정행위 의혹 제보에 대한 대학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조사 결과, 대학원생이었던 피조사자 A의 석사학위논문이 ‘표절’의 연구부정행위가 있다고 최종 판정됨에 따라 학위를 취소함. ○ 지도교수 B에 대한 처분: 신규 논문지도 중단(제자 학위 취소 결정일로부터 2년간). 							

사례 2-7	2개의 연구부정으로 불문 경고 처분						
	학문분야	직위	연구물 유형	연구부정 행위유형	징계시효	대학측 처분	법원/ 소청 결정
	인문학	전임교원	학술논문	표절, 부당한 중복게재	미경과	경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보자가 피조사자의 논문 5편과 저서 1편에 대하여 중복게재와 표절로 제보. ○ 대학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는 피조사자의 논문 중 1편은 ‘부당한 중복게재’ 및 ‘표절’, 1편은 ‘부당한 중복게재’로 판정. ○ 자신의 선행 연구물을 활용하여 후속 논문을 집필할 때 출처를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나 해당 논문은 출처가 누락되었기 때문에 중복게재로 판정하였으며, 표절로 문제된 부분은 논문 전체에서 2문장만 차지했지만 단 한 문장이라도 출처 표기 없이 타인의 문장을 그대로 인용하였다면 이는 표절로 보되 비난의 정도가 낮은 경한 표절로 판정하였음. ○ 대학 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사안이 경미하며, 유사 전력이 없는 점, 피조사자가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계위원회에서 불문 경고 처분함. 							
사례 2-8	석사학위 논문에서의 표절로 학위 취소 처분						
	학문분야	직위	연구물 유형	연구부정 행위유형	징계시효	대학측 처분	법원/ 소청 결정
	사회과학	대학원생	학위논문	표절	미경과	학위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조사자 A는 □□대학 대학원 석사 졸업생이며, 제보자는 피조사자의 석사 학위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이 제보됨. ○ 피조사자 A는 제보 사실을 인정하였고, □□대학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조사 결과 전체 목차가 거의 동일한 점, 문장 및 문단과 장별 구성이 동일한 점을 근거로 ‘표절’로 최종 판정하였음. ○ 표절 판정에 따른 학위 취소 결정. ○ 양정기준 : □□대학 대학원학칙시행세칙 제*조(연구윤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위청구논문과 학술지 게재 논문 또는 그 작성과정 등이 연구윤리에 어긋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학위 취소 및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사례 2-9	논문 표절로 견책 처분						
	학문분야	직위	연구물 유형	연구부정 행위유형	징계시효	대학측 처분	법원/ 소청 결정
	농·수· 해양학	전임교원	학술논문	표절	미경과	견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신고센터에 전임교원의 연구논문 표절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었고, □□대학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해당 건에 대한 조사 및 검증 결과, 연구부정행위인 '표절'임을 확정.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제12조 제1항 제3호(표절)에 해당하는 비위사건으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징계기준과 유사 징계처분 사례에 근거하여 경징계를 요구함.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감경 대상 아님. 							
사례 2-10	석사학위 논문에서의 표절로 학위 취소 처분						
	학문분야	직위	연구물 유형	연구부정 행위유형	징계시효	대학측 처분	법원/ 소청 결정
	예술· 체육학	대학원생	학위논문	표절	미경과	학위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사학위논문의 표절 의혹을 제기한 익명의 우편 제보가 접수됨. ○ 피조사자가 혐의를 인정. 혐의 인정에 따른 소명서를 요청하였으나 피조사자는 회신하지 않음. ○ 해당 대학에서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표절' 판정됨. 이후 해당 담당 대학원으로 이첩함. ○ 해당 대학원에서 표절에 따른 학위 취소를 결정함. 							

사례 2-11	논문 표절로 감봉 처분						
	학문분야	직위	연구물 유형	연구부정 행위유형	징계시효	대학측 처분	법원/ 소청 결정
	인문학	전임교원	학술논문	표절	미경과	감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조사자인 전임교원이 ○○학회에 논문의 사진 철회를 요청하였음. ○ ○○학회에서 피조사자의 철회 요청에 따른 자체 연구윤리위원회 조사 결과, 연구부정 행위에 해당하는 ‘표절’로 판정하였음. ○ 학술지에서 표절 판정 후 피조사자의 소속대학으로 판정결과를 통보함. ○ 피조사자의 소속대학에서 학술지의 판정결과를 통보 받은 후, 자체 연구윤리위원회 조사를 실시하였음. ○ 소속대학의 연구윤리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자가 표절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표절’ 판정을 확정하였음. ○ □□대학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징계 제정. ○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감봉’ 징계 처분 결정. 							
사례 2-12	논문 표절로 주의 처분						
	학문분야	직위	연구물 유형	연구부정 행위유형	징계시효	대학측 처분	법원/ 소청 결정
	공학	전임교원	학술논문	표절	미경과	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담당자에게 A교수 연구실에서 연구부정행위인 표절을 하여 국제 학술대회에 학술지 논문을 투고했다는 의혹이 전자우편으로 제보됨. ○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개최하고 피조사자에게 제보 사실과 소명서 제출을 요청함. ○ 피조사자는 제보 사실을 인정하였음. 예비조사위원회 및 이후 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적으로 ‘표절’로 판정함. ○ 교원인사위원회에 판정 결과를 이첩 후 ‘주의’ 처분을 확정하였음. 							

사례 2-13	지도학생의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하여 경고 처분						
	학문분야	직위	연구물 유형	연구부정 행위유형	징계시효	대학측 처분	법원/ 소청 결정
	예술· 체육학	전임교원	학술논문	표절	경과	경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감사에서 □□대학 A교수가 대학원 제자인 C, D의 석사 학위논문을 B교수는 제자 E의 석사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 제기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여부 조사. ○ 연구윤리위원회의 '표절' 판정 결과에 따라 대학 징계위원회에 징계 요구.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에 따라 징계시효가 경과되어 징계의결 요구는 불가하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2020.1.)」 공무원의 주의·경고 등 처분지침에 따라 『경고』처분. 							
사례 2-14	학위논문 표절로 학위 취소 처분						
	학문분야	직위	연구물 유형	연구부정 행위유형	징계시효	대학측 처분	법원/ 소청결정
	공학	대학원생	학위논문	표절	미경과	학위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사 졸업생인 A와 B의 학위논문과 학술지 게재 논문 간의 연구부정행위(표절) 의혹이 확인됨. ○ 연구윤리진실성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대학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에 정의된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인 '표절'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결과 통보. ○ □□대학 학칙을 준용 "학위를 받은 자가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및 □□대학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총장은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을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위를 취소할 수 있으며, 관련자를 징계할 수 있다"에 의거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석사학위를 취소하였음. 							

사례 2-15	저서 표절로 견책 처분						
	학문분야	직위	연구물 유형	연구부정 행위유형	징계시효	대학측 처분	법원/ 소청결정
	인문학	전임교원	저서 (단행본)	표절	미경과	견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교수의 저서가 다른 교수의 저서를 표절하였다는 의혹이 발생하여, 소속대학에서 자체 조사를 진행하였음. ○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 ‘표절’로 확인되었음. ○ 징계위원회에서 A교수에게 표절에 따른 견책 처분하였음. 							
사례 2-16	인용 표시 없이 박사학위논문 작성한 표절로 학위 취소 처분						
	학문분야	직위	연구물 유형	연구부정 행위유형	징계시효	대학측 처분	법원/ 소청결정
	사회과학	대학원생	학위논문	표절	미경과	학위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보를 통해 대학원생인 피조사자 A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하여 연구윤리 의혹이 접수됨. ○ A의 박사학위 논문의 검증을 실시한 결과, 창의적인 타인의 연구내용이나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한 ‘표절’로 판정하였음. ○ 표절의 정도가 심각하고 의도적인 경우로 확인되어, 대학원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결정에 의해 박사학위 취소 처분. 							

사례 2-17	논문 표절 등으로 정직 처분						
	학문분야	직위	연구물 유형	연구부정 행위유형	징계시효	대학측 처분	법원/ 소청 결정
	공학	전임교원	학술논문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미경과	정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소속 A교수의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는 예비조사위원회에서 해당 논문의 교신 저자인 B교수(해당 교수)에 대한 역할이 의심되며, 연구부정행위 검증 필요성을 언급하였음. ○ 예비조사위원회가 대학 임용 후에 발행한 4건의 학술논문을 검토하여 1건은 무혐의, 3건은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된다고 판단함. ○ 학술논문 3건에 대한 본조사에서 논문 1건은 '표절', 1건은 '부당한 저자 표시', 다른 한 건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판정하였고, 이 결과를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승인함 . ○ 교원징계위원회에서 교원징계위원회 규정 및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동 규칙 「별표」 징계기준에 의거 정직 처분. 							
사례 2-18	학술 논문 표절로 견책 처분						
	학문분야	직위	연구물 유형	연구부정 행위유형	징계시효	대학측 처분	법원/ 소청 결정
	자연과학	전임교원	학술논문	표절	미경과	견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연구재단이 실시하는 연구활동 실태조사에서 A교수의 연구업적으로 등록된 논문이 불인정되었음. ○ 피조사자의 소속대학에서 관련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조사한 결과 피조사자인 A교수의 논문과 동일 제목의 다른 논문이 확인되었고, 두 논문간에 유사성이 높음을 발견하였음 ○ 연구부정행위 검증 결과 '표절'로 판정하고 견책 처분. 							

사례 2-19	학술용역보고서 표절로 경고 및 재임용 거부 처분						
	학문분야	직위	연구물 유형	연구부정 행위유형	징계시효	대학측 처분	법원/ 소청 결정
	인문학	비전임 교원	연구 보고서	표절, 부당한 중복게재	미경과	경고, 재임용 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사에서, 학술용역보고서에 대한 도용(표절) 의혹 보도. ○ □□대학 특수신분교수의 용역보고서 연구부정행위 의혹 접수 및 조사. ○ □□대학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표절’ 판정. ○ 최종 처분 : 서면경고 및 재임용 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인사과에서 진상조사를 실시하여 피조사자에게 감봉 3개월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결론. - 피조사자인 특수신분교수의 징계규정이 없는 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감봉 및 직무 정지에 준하는 제재(재임용 거부)를 결정. 							
사례 2-20	특정 기관의 실태조사 자료 인용 없이 사용한 표절로 학위 취소 처분						
	학문분야	직위	연구물 유형	연구부정 행위유형	징계시효	대학측 처분	법원/ 소청 결정
	자연과학	대학원생	학위논문	표절	미경과	학위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졸업생의 학위논문과 ○○기관 연구용역보고서가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됨. ○ 피조사자인 대학원 졸업생은 본인의 학위논문 내용 중 조사방법 부분에서 재직 중이던 ○○기관이 수행한 실태조사 자료(미발간 연구용역보고서)를 2차 분석하였다고 언급하기는 했으나, 실태조사의 서술이나 결론 및 제언 등이 상당 부분 중복되는데 각각의 내용에 대해 적절한 출처표시가 되어 있지 않음. ○ 대학에서 학위논문에 ‘표절’이 있었다고 판정. ○ 학위 취소 처분. 							

사례 2-21	논문 표절로 학위 취소 처분						
	학문분야	직위	연구물 유형	연구부정 행위유형	징계시효	대학측 처분	법원/ 소청 결정
	사회과학	대학원생	학위논문	표절	미경과	학위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대학에서 □□대학 졸업생 A에 대한 학위논문 표절 검증 및 확인 요청함. ○ □□대학에서 자체 규정 및 조사결과에 의거 연구부정행위(‘표절’)로 판정. ○ 대학원 학위수여규정에 의거 학위 취소 처분. 							
사례 2-22	타 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한 학술논문 출판으로 견책 처분						
	학문분야	직위	연구물 유형	연구부정 행위유형	징계시효	대학측 처분	법원/ 소청 결정
	인문학	기타	학술논문	표절	미경과	견책(감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조사자 A가 게재한 논문에서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활용하여,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한 적이 있다는 의혹이 제보됨. ○ 추후 피조사자 A가 학회지에서 연구윤리위원회 심의 결과 타대학교 B의 석사학위논문을 표절하였다는 사유로 게재가 철회된 사실이 추후 확인되었음. ○ 피조사자의 소속대학에서는 타대학교 B의 석사학위를 ‘표절’하였다는 사유로 게재가 철회된 사실은 명백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징계기준에 의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로 보아 견책으로 양정하였음. ○ 감경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직기간 동안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 점, 교수가 아닌 점, 논문게재료 등과 같은 부당이득을 받지 않은 점, 이러한 일이 처음이고 문제되는 논문이 한 편인 점, 해당학회의 재무이사직을 사임하고 자숙했던 점을 징계양정에서 참작. 							

사례 2-23	논문 표절로 승진 및 임용 불이익 처분						
	학문분야	직위	연구물 유형	연구부정 행위유형	징계시효	대학측 처분	법원/ 소청 결정
	의·약학	비전임 교원	학술논문	표절	미경과	승진 및 임용 불이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전임 교원으로 재직하던 피조사자가 전임교원 공개초빙에 최종합격하였음. ○ 공개초빙에 제출한 연구실적물인 논문에서 표절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보되어 대학에서 조사를 실시. ○ 피조사자가 제출한 논문에 대한 연구부정행위 의혹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인 ‘표절’이 있었다고 판정. ○ 표절 판정에 따라 임용 취소 처분. 							
사례 2-24	논문 표절 등 2개 연구부정으로 승진 및 임용 불이익 처분						
	학문분야	직위	연구물 유형	연구부정 행위유형	징계시효	대학측 처분	법원/ 소청 결정
	자연과학	전임교원	학술논문	표절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미경과	승진 및 임용 불이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 조교수의 승진임용 심사에 제출된 학술논문에 관한 연구부정행위 의혹이 제보되었음. ○ 의혹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검증 결과 ‘표절’ 및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로 판정되었음. ○ 연구부정행위 판정에 따라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한 결과 ‘승진임용 취소 동의’로 최종 처분하였음. ○ A교수는 동일직급 재계약 횟수제한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 							

사례 2-25	논문 표절로 학위논문 철회						
	학문분야	직위	연구물 유형	연구부정 행위유형	징계시효	대학측 처분	법원/ 소청 결정
	사회과학	대학원생	학위논문	표절	미경과	학위논문 철회	
<p>○ □□대학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연구부정행위 제보란에 익명 제보 접수. - 제보내용 : 피조사자 A의 석사학위 논문이 B 연구자의 학술논문과 C교수의 논문을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그대로 표절하였으므로 연구윤리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바람.</p> <p>○ 제보를 접수하여 A의 석사학위 논문을 조사한 결과 연구윤리 의무를 위반한 '표절'이 확인 되어 학위논문을 철회하였음. - 연구진실성위원회 제*조 ○항 제*호에 의거한 표절.</p>							
사례 2-26	외부 연구기관 보고서 표절로 학위 취소 처분						
	학문분야	직위	연구물 유형	연구부정 행위유형	징계시효	대학측 처분	법원/ 소청 결정
	공학	대학원생	학위논문	표절	미경과	학위취소	
<p>○ 20**.*. □□대학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연구부정행위 제보에 익명제보 접수. - 제보내용 : 20**년 귀 대학의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A의 석사학위 논문이 20**년 000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심각하게 표절한 것으로 예상.</p> <p>○ 대상자 석사학위논문의 연구윤리 의무 위반. - 연구진실성위원회 제*조 *항 *호에 의거한 '표절'로 판정.</p> <p>○ 대학원 학칙 제*장 제**조에 의거 학위 취소. - 학위논문에 관한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각 대학원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그 수여를 취소할 수 있음.</p>							

사례 2-27	타 대학교 학위논문 표절로 논문 철회 처분						
	학문분야	직위	연구물 유형	연구부정 행위유형	징계시효	대학측 처분	법원/ 소청 결정
	사회과학	대학원생	학위논문	표절	미경과	학위논문 철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일로 학위논문에서의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보내용 : □□대학 A와 □□대학 B 논문의 단락을 표절. ○ 학위를 부여한 대학에서 제보를 접수하여 석사학위 논문을 조사한 결과 연구윤리 의무를 위반한 ‘표절’이 확인되어 학위논문을 철회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에 의거 표절에 해당. 							
사례 2-28	논문 표절로 경고, 논문 철회 처분						
	학문분야	직위	연구물 유형	연구부정 행위유형	징계시효	대학측 처분	법원/ 소청 결정
	인문학	전임교원	학술논문	표절	미경과	경고, 논문 철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과 관련하여 한국연구재단으로 연구부정행위 의혹이 접수 됨. ○ 피조사자의 소속 대학에서 연구윤리위원회 개최. ○ 연구윤리위원회 요구내용: 한국연구재단 연구부정행위 신고내용 이관에 따른 연구부정 행위 심의에 관한 사항 부분을 본인이 ‘표절’로 인정하였기에 연구윤리위원회에서 교원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 요청으로 안건 상정. ○ 서면경고 처분하고, 학술논문 철회를 요청. 							

사례 2-29	학생들의 학술제 논문 표절로 정직 처분						
	학문분야	직위	연구물 유형	연구부정 행위유형	징계시효	대학측 처분	법원/ 소청결정
	자연과학	전임교원	학술논문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미경과	정직	해임→ 정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교수가 학생들의 학술대회 논문을 본인의 논문으로 등재하였다는 의혹 발생. ○ 연구부정행위 제보 및 인지에 따른 대학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 및 본조사 실시, 대학 연구윤리위원회 본조사 결과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등에 해당 하는 것으로 판정. ○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 ○ 교원소청심사 청구 결과 정직 3월로 변경. 							
사례 2-30	논문 표절로 정직, 승진 및 임용 불이익의 징계 처분						
	학문분야	직위	연구물 유형	연구부정 행위유형	징계시효	대학측 처분	법원/ 소청 결정
	자연과학	전임교원	학술논문	표절	미경과	정직, 승진 및 임용 불이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부정행위인 ‘표절’ 논문을 승진심사 등에 사용. ○ 연구부정행위 판정 후 표절 논문을 승진심사에 활용한 사유로 징계처분. ○ 양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위의 유형은 “성실의무 위반(신규채용, 특별채용, 승진, 전직, 전보 등 인사와 관련된 비위)”.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사례 2-31	논문 표절로 연구비 회수, 논문 철회 처분						
	학문분야	직위	연구물 유형	연구부정 행위유형	징계시효	대학측 처분	법원/ 소청 결정
	사회과학	퇴직교원	학술논문	표절	경과	연구비 회수, 논문 철회 요청	

○ 타 대학에서 연구부정행위 신고내용 이관 접수.
 - 제보자: 익명, 피조사자: 명예교수 A.
 ○ 연구윤리위원회 검증을 실시하여, '표절'로 판정.
 ○ 교원인사위원회 의결: '교내연구비 반납' 조치.
 ○ 양정기준
 - □□대학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 및 본조사 결과 '표절'로 판정.
 - 피조사자 '표절' 인정, 논문 자진철회 및 연구비 반납 의사 표명.
 ○ 감경/가중 사유: 해당 교원은 퇴직교원(명예교수 신분)으로 연구비 반납 외 제재조치 불가.

3 ▶ 부당한 저자 표시 등에 따른 징계 사례

사례 3-1	미성년자녀 공저자의 부당한 저자 표시로 정직 처분						
	학문분야	직위	연구물 유형	연구부정 행위유형	징계시효	대학측 처분	법원/ 소청결정
	자연과학	전임교원	학술논문	부당한 저자 표시	미경과	정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교수가 정부의 지원을 받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제출한 논문에 저자인 A교수의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하였고, 본조사위원회에서 심의결과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로 판정 됨. ○ 징계요청(관련근거 : 연구윤리 및 진실성확보를 위한 규정 제*조 ○항). ○ 정직 3개월 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교원인사규정 제○○조(성실의무), 제○○조(품위유지의무) 제○○조(제규정 준수 의무) 위반. 							
사례 3-2	부당한 저자 표시로 논문 철회 요청						
	학문분야	직위	연구물 유형	연구부정 행위유형	징계시효 경과여부	대학측 처분	법원/ 소청결정
	의·약학	대학원생	학술논문	부당한 저자 표시	미경과	논문 철회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부정행위 의혹 제보에 대한 □□대학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조사 진행. ○ 조사 결과, 피조사자인 대학원생 A의 조사대상 논문에서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의 연구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최종 판정. ○ 피조사자인 대학원생의 자퇴로 징계 미처분, 해당 학술지에 논문 철회 요청. 							

사례 3-3	기여도가 없는 자를 공저자로 부당한 저자 표시 하여 주의 등 처분						
	학문분야	직위	연구물 유형	연구부정 행위유형	징계시효	대학측 처분	법원/ 소청 결정
	공학	전임 교원	학술논문	부당한 저자 표시	미경과	주의, 성과급 및 보수 반영	
<p>○ ○○○센터 지원, 연구과제 결과물로 제출(20**.*.*)된 논문에 대한 연구부정(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신고 접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보자 : ○○○센터 B - 피조사자: □□대학 A교수 - 신고대상 공저자 : 타대학 C부교수 - 신고내용: ○○○센터에서 위탁받은 연구과제 결과물(20**.*.*)의 타대학 공저자의 전공 관련 연구 내용이 본 연구결과물 논문의 공동저자로서의 역할로 합당하지 않음. <p>○ 지원기관(○○○센터)에 접수된 연구부정 신고에 대하여 연구부정행위 검증 실시하여 ‘부당한 저자 표시’ 판정하고 주의 및 성과급·보수에 반영 처분.</p>							
사례 3-4	부당한 미성년자녀 공저자 표시와 기타 사유로 견책 처분						
	학문분야	직위	연구물 유형	연구부정 행위유형	징계시효	대학측 처분	법원/ 소청 결정
	공학	전임교 원	학술논문	부당한 저자 표시	미경과	견책	
<p>○ 교원 A는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녀(자녀)와 20**년 학회 학술대회에 참가하여 학술발표 논문을 게재하였음.</p> <p>○ 연구실적물에 대한 실태조사 요구에 따른 자체 조사 결과에 의거 교원 A의 학술대회 발표 논문 중 특수 관계(해당 교원의 자녀)인 공동저자와의 연구실적물을 확인하여 미성년자녀의 공동연구자로서의 역할에 대하여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공동연구자로서의 기여도가 충족하지 못하므로 연구부정행위로 판정, 교원징계위원회로 징계를 요청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당한 저자 표시’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미성년 자녀와의 공동연구 실적물 제출에 있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연구자로서의 역할을 소명하지 못함). <p>○ 양정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밖의 기타사유와 병합하여 처분. 							

사례 3-5	학생 제출 과제 단독저자로 게재한 부당한 저자 표시로 감봉 처분						
	학문분야	직위	연구물 유형	연구부정 행위유형	징계시효	대학측 처분	법원/ 소청 결정
	인문학	전임교원	학술논문	부당한 저자 표시	미경과	감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교수의 학술논문과 A교수의 수강생이었던 제보자의 과제 제출물 간 표절 의혹이 해당 학술지에 제기됨. ○ 학술지에서 연구윤리규정 위반(부당한 저자 표시)으로 최종 의결됨에 따라 해당 논문 게재 철회, 투고자격 정지(3년), 재발간비용 청구 후, 피조사자의 소속대학으로 통보. ○ 소속대학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피조사자인 A교수의 연구부정행위('부당한 저자 표시') 최종 결정. ○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최종 심의결과(부당한 저자 표시) 통보 및 징계조치 요청. ○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 위반으로, 공무원비위사건 처리규정 별표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에 따라 중징계 요구. ○ 부당한 논문 저자표시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 위반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및 교육공무원법 제51조 제1항의 징계 사유에 해당되어 경징계(감봉 3월)로 징계 양정. 							
사례 3-6	부당한 미성년자녀 공저자 표시로 경고 처분						
	학문분야	직위	연구물 유형	연구부정 행위유형	징계시효	대학측 처분	법원/ 소청결정
	공학	전임교원	학술 논문	부당한 저자 표시	경과	경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 교원 A는 학술대회에서 연구결과물을 발표하면서 프로시딩 3편을 발표 하였으며 당시 미성년자인 자녀 B, C 2명을 공동저자로 포함한 사실이 있음. ○ 연구진실성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자의 소명자료 등을 근거로 검토한 결과 미성년자 자녀 2명이 저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는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음. ○ 따라서, 교원 A는 교육부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2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중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함. ○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에 따라 연구윤리의 위반 판정에 따라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의결. ○ 처분내용 : 경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유 : 교원 A는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대학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나, 해당 사안이 20**년에 발생하여 학교법인 정관의 징계사유의 시효가 경과하여 실질적 징계의결이 어려운 점을 감안함. 							

사례 3-7	부당한 미성년자녀 공저자로 경고 처분						
	학문분야	직위	연구물 유형	연구부정 행위유형	징계시효	대학측 처분	법원/ 소청결정
	자연과학	전임교원	학술논문	부당한 저자 표시	경과	경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 미성년 소속 저자 포함 연구물에 대한 검증 의뢰가 있어 □□대학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 *조에 의거 본조사 실시. ○ 미성년자 부당저자표시 의혹 조사에 대한 연구윤리위원회 본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대상 논문의 제1저자 자격은 '부당한 저자 표시'로 최종 판정. ○ 연구부정행위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징계부터 중징계까지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징계사유 발생일은 논문이 게재된 20**년 **월로서 징계시효 도과로 징계의결 요구 불가. ○ 연구부정행위로 교육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경고 처분. 							
사례 3-8	연구에 기여한 학생을 제외하고 단독저자로 논문 게재하여 정직, 연구비 회수						
	학문분야	직위	연구물 유형	연구부정 행위유형	징계시효	대학측 처분	법원/ 소청 결정
	자연과학	전임교원	학술논문	부당한 저자 표시	미경과	정직, 연구비 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교수와 학생 7명이 연구를 진행하여 학술발표를 함. ○ 20**년 **월 A교수가 ○○○학회에 단독저자로 논문 게재. ○ 20**년 대학 내부 신문고를 통해 연구에 참여했던 학생이 단독저자로의 논문 게재를 제보 하였으며, 대학에서 연구윤리위원회 조사 진행. ○ 연구윤리위원회 조사 결과 '부당한 저자 표시' 위반으로 교원인사위원회 징계 요청 및 해당 연구에 대한 연구비 회수. ○ 교원인사위원회에서 A교수에 대해 경징계로 징계의결 제청. ○ 교원징계위원회 심의결과 정직 2월 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처분 이전 '건축'건으로 징계 가중 처벌기준 적용. 							

사례 3-9	제자 출품작에 부당한 미성년자녀 공저자 표시의 연구부정과 기타 사유로 파면 처분						
	학문분야	직위	연구물 유형	연구부정 행위유형	징계시효	대학측 처분	법원/ 소청결정
	예술· 체육학	전임교원	작품	부당한 저자 표시, 기타	미경과	파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자의 디자인 공모전 출품작에 지도교수가 자녀 이름을 포함 시켰다는 학부 재학생의 주장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연구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됨. ○ 피조사자인 지도교수의 소속 대학에서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한 결과 지도교수가 수년간 출품하여 수상한 5개 디자인 공모전에 출품한 연구실적물에서 실제로 연구부정 행위인 ‘부당한 저자 표시’가 있었다고 판정하였음.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교육공무원법 제51조제1항, 공무원비위사건처리규정 등의 규정에 의거 징계의결 요구. ○ 공모전 수상 작품에 실질적 기여가 없었던 자녀를 포함시킨 연구부정행위 및 다수의 기타 사유와 병합하여 파면 처분하였음. 							
사례 3-10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자를 제1저자로 표시하여 감봉 등 징계 처분						
	학문분야	직위	연구물 유형	연구부정 행위유형	징계시효	대학측 처분	법원/ 소청결정
	예술· 체육학	전임 교원	학술논문	부당한 저자 표시	미경과	감봉, 성과급 및 보수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술논문을 출판한 저자가 직접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대학 인권센터에 신고 ○ 의혹 관련 연구윤리위원회 조사 결과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제 **권 *호)에 공신저자로서 논문을 투고하는 과정에서 해당논문에 참여·기여하지 않은 자를 임의로 제1저자로 변경·등록하여 연구부정행위 중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함을 판정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교육공무원법 제51조제1항, 공무원비위사건처리규정 등의 규정에 의거 징계의결 요구 							

사례 3-11	부당한 미성년자 공저자 표시로 경고 처분						
	학문분야	직위	연구물 유형	연구부정 행위유형	징계시효	대학측 처분	법원/ 소청 결정
	사회과학	전임교원	학술논문	부당한 저자 표시	미경과	경고	

○ 교육부 '초·중등학교 소속 저자 포함 연구물'에 대한 연구부정행위 여부 검증 요청에 따라 20**년에 미성년 저자 3인이 포함된 논문을 게재한 A교수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함.

○ 조사 결과 미성년 저자들이 설문조사 실시를 통한 데이터 획득에는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나 실질적으로 논문 저자의 자격을 갖췄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워 연구부정행위('부당한 저자 표시')로 판정함.

○ A교수의 행위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나 미성년 저자들의 기여가 어느 정도는 있었으며, 해당 행위에 고의성이 없고 논문 저자자격에 대한 A교수의 착오에 의해 야기된 경미한 부정행위로 판단.

4 ▶ 부당한 중복게재 등에 따른 징계 사례

사례 4-1	2개 학술지에 동일한 논문의 중복게재로 경고 및 논문 철회 처분						
	학문분야	직위	연구물 유형	연구부정 행위유형	징계시효	대학측 처분	법원/ 소청결정
	인문학	전임교원	학술논문	부당한 중복게재	미경과	경고, 논문철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교 ○○○○(해당 대학 KCI 등급 학회지)에 등재된 논문을 □□대학교 ○○ ○○연구 논문집에 이중으로 등재됨('부당한 중복게재'). ○ 향후 3년간 투고금지 및 논문 철회 처분 요구. ○ 논문을 자진철회토록하고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고. 							
사례 4-2	부당한 중복게재로 불문 경고 처분						
	학문분야	직위	연구물 유형	연구부정 행위유형	징계시효	대학측 처분	법원/ 소청 결정
	의·약학	전임교원	저서 (단행본)	부당한 중복게재	미경과	경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보자가 피조사자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규정을 준수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예비조사, 본조사 실시. ○ 최종결과 연구부정행위(본인이 이미 발표한 자료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다시 출판하거나 게재하는 자료의 중복사용 행위)가 본조사 최종 결과보고서를 통해 확인되 었고 이를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부당한 중복게재’로 판정. ○ 피조사자에게 결과 통보 후 피조사자의 재심의 요청을 접수하여 제△차 연구윤리위원회 회의에서 재심의 요청 심의 결과, 기각되었음. ○ 위 사건개요에 의한 연구윤리위원회의 징계조치 권고에 의하여 총장은 징계 수준을 경징계로 양정하여 교원징계위원회에 의결을 요구. ○ 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의결요구서 등 관련 자료와 징계혐의자 본인의 의견진술을 토대로 심의를 통해 「사립학교법시행령」과, 소속대학 정관에 의거하여 불문경고로 의결함 ○ 징계위원회 심의 시 학과장으로서의 기여를 참작하였음. 							

사례 4-3	국내 논문과 해외 논문 간의 중복게재로 감봉 처분						
	학문분야	직위	연구물 유형	연구부정 행위유형	징계시효	대학측 처분	법원/ 소청 결정
	인문학	전임교원	학술논문	부당한 중복게재	미경과	감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 출판한 국내 논문과 20**년 출판한 해외 논문간의 중복게재 의혹 제보와 관련하여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해당 제보를 접수 및 검증하여 ‘연구부정행위’로 최종판정 ○ 최종판정 시 연구부정행위 유형은 ‘부당한 중복게재’(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로 판정함. ○ 경징계 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인사규정 제**조 직책완수의 의무 위반 (연구부정행위) 및 연구윤리규정 제*조(정의) 및 연구업무관리규정 제*조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 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됨. - 상기사실은 연구책임자로서 제반규정의 준수 등 교원 본연의 직책완수의무 및 연구윤리 준수 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 인해 초래된 비위임. ○ 감경 제한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계규정 제*조(징계의 감경)* 제*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사례 4-4	연구실적 작품의 부당한 중복게재 및 기타사유로 해임 처분						
	학문분야	직위	연구물 유형	연구부정 행위유형	징계시효	대학측 처분	법원/ 소청 결정
	예술·체 육학	전임교원	작품	부당한 중복게재	미경과	해임, 징계부가 금	해임, 징계 부가금 → 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년 동안 동일한 미술작품을 전시한 실적을 소속대학의 연구실적으로 제출하여 성과급적 연봉제 연구점수를 획득하고 연구비를 부당하게 수령하였으며, 연구부정행위 검증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방해행위’를 하였음.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제78조의2(징계부가금) 및 교육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징계의 기준) 1(성실의무 위반), 7(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국가 공무원법 제82조(징계 등 절차) 외 교육공무원법 제51조(징계의결요구)에 의거 중징계 의결을 요구. ○ 부당한 중복게재 판정과 기타 사유를 병합하여 징계 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교원이 신청한 교원소청심사에서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하였으나, 해임 및 징계부가금 3배 부과 처분이 취소됨. 							

사례 4-5	본인의 이전 저서를 출처 없이 사용한 부당한 중복게재로 감봉 처분						
	학문분야	직위	연구물 유형	연구부정 행위유형	징계시효	대학측 처분	법원/ 소청 결정
	자연과학	전임교원	저서 (단행본)	부당한 중복게재	미경과	감봉	
<p>○ A교수가 정부재정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교재의 내용 중 일부와 다른 저서의 내용이 중복된다는 제보가 접수됨.</p> <p>○ A교수의 소속대학은 관련 규정에 의거 자체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제가 제기된 두 저서 간에 상당 부분 유사성이 있음을 확인.</p> <p>○ 피조사자의 소속대학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사안을 심의하고, 아래와 같이 처분하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인 두 저서를 대조해 본 결과 중복이 심한 부당한 중복게재(자기표절)인 점이 명확히 드러나고, 피조사자인 A교수가 이를 인정함에 따라, 예비조사단계에서 중복이 심한 ‘부당한 중복게재’(자기표절)로 판정. <p>○ 양정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대학은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A교수에게 감봉(2개월) 징계 처분. - 본 사안이 중복이 심한 부당한 중복게재(자기표절)에 해당하는 점, 그러나 원고 전달 시 출처를 표기하였던 최종본이 아닌 수정본이 제출되어 저자의 의도와 달리 출판이 이루어진 점을 참작하였음. 							

5

통상적 용인 범위 이탈 행위에 따른 징계 사례

사례 5-1	유사성이 학문분야 용인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로 경고 처분						
	학문분야	직위	연구물 유형	연구부정 행위유형	징계시효	대학측 처분	법원/ 소청 결정
	농·수· 해양학	전임교원	학술논문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미경과	경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커뮤니티 및 우편물로 피조사자 A교수 논문의 연구부정행위 제보가 접수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험방법에서 대상 종은 다르나 서론, 결과 및 고찰이 비슷하다는 내용. ○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로 판정. ○ 경고 조치 처분 요구. 							
사례 5-2	타인작성 자료로 박사학위 논문을 받은 연구부정 행위로 학위 취소						
	학문분야	직위	연구물 유형	연구부정 행위유형	징계시효	대학측 처분	법원/ 소청 결정
	사회과학	대학원생	학위논문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미경과	학위 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원생 A는 B에게 제공받은 자료를 본인의 학위논문으로 활용하여 발표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함. ○ □□대학 연구윤리위원회에서는 타인이 작성한 자료를 그대로 활용한 행위는 연구부정행위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 ○ □□대학 총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정, 대학원위원회에 처분심의 요구. ○ □□대학 학칙 제 △ △ 조(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 취소)에 따라 박사학위를 취소 처분. 							

대학 연구부정 징계 사례집

2021년 12월 23일 인쇄

2021년 12월 23일 발행

발행처 : 한국연구재단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문의처 : 한국연구재단 윤리정책팀(042-869-6649)

ISBN : 979-11-86956-20-5

〈 비매품 〉

※ 이 사례집의 내용은 허락 없이 변경하거나 전재할 수 없습니다.



대학 연구부정 징계
사례집

NRF 한국연구재단

